

	<h2 style="margin: 0;">전과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04
		제정일자	2004. 8. 1
		개정일자	2025. 9. 1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 25조에 따라 전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‘전과’란 재적중인 학과(전공) 및 주·야간에서 학적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전입·전출로 구분한다.
- 제3조(시기) 전과의 시기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(3년제 학과의 경우 3학년 1학기)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며,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,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3.1., 2014.10.6., 2015.3.1., 2015.9.1., 2021.8.30., 2024.1.1.)
- 제4조(허용범위)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이후 매학기 입학년도 입학정원의 50%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, 그 총원은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산업체위탁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와 유아교육학과 및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하되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복학 시 학과 폐지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5.3.1., 2015.9.1., 2021.8.30., 2024.1.1., 2025.9.1.)
- ② 학과(전공)의 통폐합 및 폐과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총장의 결재로 허가 할 수 있다.
- ③ 삭제 (2021.8.30.)
- ④ 삭제 (2021.8.30.)
- 제5조(절차) 전과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4.10.6. 2019.8.1)
1. 학생은 전과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과신청 기간에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.
 2. 삭제 (2014.10.6.)
 3. 해당학과에서는 접수된 전과대상자를 상대로 전형을 실시한다.
 4. 학과에서는 대상자들의 사정결과보고서를 학과(전공)교수회의 심의 후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.
 5. 교무학생처에서는 학과에서 결정된 사항(사정결과)을 확인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.
 6. 전과신청대상자가 확정되면 교무학생처에서는 해당 학과에 통보한다.
- 제6조(사정기준) 전과에 따른 사정기준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.

구 분	동일계열	타 계열 및 전공
사정기준(참고)	① 학업성적(전학기) ② 면접(적성) ③ 기타	① 학업성적(전학기, 자격증) ② 면접(적성) ③ 기타

- 제7조(이수과목 및 학점)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 회의에서 전출학과 전공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졸업직전학기에 전과한 자의 졸업기준은 전입학과 회의에서 결정한다. (개정 2021.8.30.)
- 제8조(등록금 관계) 전과로 인하여 기납입한 등록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또는 환불할 수 있다.

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